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4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3. 11. .

제출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,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내방객 등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(안 제3조제1항)
- 나.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출입 통제(안 제3조제2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12. ~ 2023. 11. 2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(2023. 11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
징수 여부를 따로 정”을 “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
개방하지 아니”로 한다.

- 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<u>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며, 그 외의 시간 및 토요일,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.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,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 징수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3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<u>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로 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---- <u>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나 개방하지 아니</u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10px 0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윤희주 (☎ 3153-8206)